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군·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	------	-----	------	---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